

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. 10. 23 선고 2024가단1578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등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망 C의 상속인 D

변 론 종 결 2024. 9. 25.

판 결 선 고 2024. 10. 2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이천시 E 전 1,130㎡ 중 별지 도면 표시 ㉠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 및 철판지붕 주택 1동 116.4㎡ 및 같은 도면 표시 ㉡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창고 1동 22.4㎡를 각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다만 청구원인 기재 ‘피고’는 ‘망 C’으로, ‘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’은 ‘이천시 E 전 1,130㎡’으로 본다).

2.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1항)

판사 이성은

별지